

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



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

의안 번호	725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17. 9. .

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1. 제안이유

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,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운영중인 ‘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’의 운영규약을 제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침으로써 지방자치법상 행정협의회로 전환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협의회 명칭을 ‘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’로 정함(안 제1조)
- 나. 협의회 운영 목적은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, 북한 육로관광의 시작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관광산업활성화(안 제2조)
- 다. 구성은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, 경상북도로 하며 회원은 각 시·도의 관광담당 국장으로 함(안 제3조)
- 라. 협의회 주요사업은 4개 시·도 광역관광상품개발 및 홍보, 관광 정보교환 및 국내·외 관광 판촉활동 전개, 관광상품 공동개발·판매 홍보물 제작, 해외 관광기획자 초청 팸투어 실시 등(안 제4조)
- 마. 협의회 임원은 회장, 실무위원장, 감사를 각 1명씩 두고 회장은 시·도 관광담당 국장 중에서 임기 1년씩 윤번제로 하며, 그 순서는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, 경상북도 순으로 함(안 제5조)

- 바.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두고 정기회의는 년1회 12월중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(안 제6조)
- 사. 협의회는 사무국을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두고 간사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함(안 제9조)
- 아. 협의회는 분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하고 분담금은 실무위원회의 심의 거쳐 정기에서 결정함(안 제11조)

3. 규약안 : 붙임

4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

5.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
6. 관련부서 협의 : 해당사항 없음

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 운영규약(안)

제1조(명칭) 본 협의회는 『동해안권관광진흥협의회』(이하 "협의회"라 함)라 한다.

제2조(목적) 협의회는 외국인관광객 증가추세, 북한 육로관광의 시작, 주5일제 근무 등 관광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과 공동 대처로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구성) ①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협의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
1.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강원도 및 경상북도(이하 "각 시·도"라 한다)의 관광담당국장
2. 각 시·도에서 다음 각목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
 - 가. 지방관광공사 1명
 - 나. 관광협회 1명
 - 다. 관광업계 1명
 - 라. 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
3. 협의회 회장 시·도의 관광담당과장

③제2항제2호의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④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실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둔다.

제4조(사업)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동해안권관광상품의 개발(수요자 인센티브 부여) 및 해외 홍보
2. 관광정보의 교환 및 국내·외 관광 판촉활동 전개
3. 관광상품의 공동개발·판매, 홍보물 제작
4. 해외 관광기획자 초청 팸투어

5. 북한 육로관광과 동해안권관광상품의 연계
6. 기타 관광공사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등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5조(임원) ①협의회에 회장, 실무위원장, 감사를 둔다.

- ②협회의 회장은 부산광역시·울산광역시·강원도·경상북도의 관광담당국장으로 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윤번으로 맡기로 한다.
-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.
- ④회장 유고시에는 차기 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⑤감사는 차기 실무위원장으로 하며 일반사무, 재정 등을 감사한다.

제6조(회의) ①협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개최한다.

1. 정기회의는 연 1회 12월중 개최하며 일자는 회장이 정한다.
2.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각 회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- ②협회의 회의에서는 다음사항을 결정한다.
 1. 협회의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 2. 본 협약의 改·廢에 관한 사항
 3. 기타 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③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회의 안건을 정리하여 회원들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.
- ④회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⑤협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결정족수) 정기회 및 임시회의 안건은 3개 이상의 자치단체회원을 포함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8조(실무위원회) ①실무위원회는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시·도의 관광담당과장 또는 관광담당으로 구성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.

1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2. 제6조 제2항의 의결범위 내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타 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소속한 관광담당과장으로 한다.
- ③실무위원회의 운영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.

제9조(사무국) ①협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.

- ②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.
- ③사무국장은 실무위원장이 겸임한다.
- ④간사는 사무국장이 소속한 실무담당으로 하고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.
- ⑤사무국에서는 회의운영, 회의록작성·비치, 예산집행·결산 및 회원 상호 연락 등 협회의 운영에 관한 행정사항을 처리한다.

제10조(회의안건 등) ①회의안건은 회의개최 2주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회의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전문가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.

제11조(사업예산) ①협회는 분담금 및 기타수입으로 운영한다.

- ②분담금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기회의에서 결정한다.

제12조(회계)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- ②협회의 예산 집행상황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13조(회원의 책임과 의무) 회원은 협회의 발전을 위해 이 협약서에 의한 책임을 지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제14조(보칙) 그 밖의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약은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.